

# 원격수업 운영규정

제정 2020. 2. 28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칙시행규칙 제63조(교외수업 등) 4항에 의거하여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학습선택권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 정의)** ① “원격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 이상을 원격(방송·통신)의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을 말하며, 원격수업에는 온라인수업, 원격강의, 가상강의, 전자강의 등의 용어를 포함한다. 다만, 강의실수업의 보조 수단(수업자료 탑재, 질의·응답, 토론 등)으로서 원격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.

② “원격병행수업”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 미만을 원격의 형태로 운영하는 블렌디드러닝, 플립러닝 등을 포함하며, “원격병행수업”은 원격수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3조(학점 인정 및 제한)** ① 원격수업과 원격병행수업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원격수업과 원격병행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은 따로 두지 않으며 학기별 이수 과목을 제한할 수 있다.

③ 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경우, 원격 수업을 통한 학점인정은 각각의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이수를 인정한다.

**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** ① 원격수업의 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,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처장, 교양대학부학장, 이러닝지원센터장, 학사팀장이 하며 임기는 보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학사팀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의 지원 및 방법과 범위에 관한 사항
4.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관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원격수업과 관련된 사항

**제5조(원격수업의 구성 및 평가)** ① 원격수업의 수업일수는 OT, 중간고사, 기말고사를 포함하여 학기당 15주로 하고 OT, 중간고사, 기말고사는 오프라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원격수업의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며, 콘텐츠 재생시간은 25분 이상, 질의·응답 및 온라인 토론 시간 등을 포함하면 50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
③ 원격수업의 성적평가는 출석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1. 대학이러닝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군 복무 중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
3.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

**제6조(수업개설)** ① 원격수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개설한다.

② 원격수업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과목으로 전임교원이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원격수업은 해당 연도 학기별 각 학부(학과)에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

④ 오프라인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부(과)장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.

⑤ 계절학기의 원격수업 개설은 직전학기에 개설된 과목의 재개설만을 허용한다.

⑥ 원격수업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교수는 1주차 및 2주차 콘텐츠를 사전에 제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계절학기 원격수업의 개설은 정규학기 강의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.

⑧ 원격수업을 재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의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단, 2회 연속하여 70점미만의 강의평가점수를 얻은 과목을 차기연도에 재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콘텐츠를 개선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⑨ 호서대학교 원격수업을 위해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호서대학교에 귀속되며, 이에 대한 관리, 감독은 이러닝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

**제7조(수강인원)** 수강인원 및 폐강기준은 오프라인 수업에 준하여 적용한다.

**제8조(원격수업 강의평가)** 원격수업의 강의평가는 강의유형에 적합한 평가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9조(원격수업 개설제한)** 원격수업 강의평가 결과 및 온라인 수업 운영 시스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.

**제10조(원격수업 지원)**

① 원격수업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수강인원이 101명 이상인 수업에 한하여 수업 지원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오프라인수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원격수업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러닝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.(“행정지원”이라함은 이러닝지원센터 인력지원과 스튜디오 및 조정실 시설사용 지원을 말한다.)

③ 계절학기 원격수업에 대해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시스템근로학생과 운영지원근로학생을 각각 1명 배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(원격수업 저작권)** ① 이 규정에 따라 제작된 강의 콘텐츠의 지식재산 소유권은 개발교수에 귀속하나 사용권은 본교와 공동으로 갖는다.

② 개발된 강의 콘텐츠를 본교 수업의 일환으로 다른 교수자가 이용할 경우 또는 개발한 교수가 본교 수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교와 개발교수간 상호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강의 콘텐츠 제작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.

**제12조(기타)**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0. 2. 28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